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60 |
|----------|-----|

2025. 4. 30.(수)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경숙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5년 4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5년 4월 14일

라. 상정일자 : 2025년 4월 22일

(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 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경숙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, 동물의 보호·관리에 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 (안 제12조)
- 인용 조문 오기 정비 (안 제14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### 가. 발의배경

- 「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」는 도내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과의 용어 불일치 및 불필요한 조항과 인용 조문의 오기가 존재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상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
- 이에 「동물보호법」 등 상위법령과의 용어를 통일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며, 인용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개정함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)

- 안 제12조제1항의 경우 현행 조례에서는 유실·유기동물 발견했을 때의 조치로 “포획·보호” 한다고 되어 있지만 상위법 「동물보호법」 제34조에 따르면 유실·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“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”를 하도록 되어있어, 실무상 적용 시 보호조치의 범위가 상위법령과 맞지 않고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보호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됨
- 한편, 같은 조 제2항의 경우 「수의사법」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에게 유실·유기동물의 진료를 맡길 수 있지만 실제로 공수의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 바 불필요한 조문이며, 업무추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안 제14조는 현행 인용조문이 잘못된 인용으로 확인되어 실제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문으로 수정하여 법령 체계의 정확성을 기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

## 다. 종합의견

- (필요성) 현행 조례는 일부 조문에서 상위법령과의 용어 불일치, 불필요하거나 잘못 인용된 조문 등이 존재하고 있어 현장의 행정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짐
- (타당성) 상위법령과의 용어일치, 실효성 낮은 조항 삭제 및 잘못된 인용조문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있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- (법적합성)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
- (종합의견)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,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,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- 5. 토론요지 : 생략
-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의 안 번 호      | 제960호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. . .<br>(제 회) |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발 의 자 | 박경숙 의원 등 7인  |
| 발의연월일 | 2025년 4월 11일 |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박경숙 의원 대표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960 |
|----------|-----|

발의연월일 : 2025년 4월 11일

발의자 : 박경숙, 김꽃임, 이옥규, 유재목  
이의영, 이종갑, 임병운

1. 제안이유

- 인용 조문의 오기를 바로잡고, 동물의 보호·관리에 대한 사항 중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 등을 통해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 (안 제12조)
- 인용 조문 오기 정비 (안 제14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5. 4.
- 협의 : 농정국 축수산과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포획·보호하여야”를 “포획하고,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전단 중 “제11조”를 “제12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2조(동물의 보호 · 관리)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유실 ·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 · 보호하여야 한다.     | 제12조(동물의 보호 · 관리) ① -----<br>-----<br>----- 포획하고, 치료 · 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---. |
| ② 도지사는 포획한 유실 · 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「수의사법」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를 위촉받은 수의사에게 진료하게 할 수 있다.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③~④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~③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4조(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원) 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호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| 제14조(보호비용의 부담 및 지원) ① ----- 제12조-----<br>-----<br>--. 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|
| ②~③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~③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동물보호법

제34조(동물의 구조·보호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·보호에 필요한 조치(이하 “보호조치”라 한다)를 하여야 하며,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·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유실·유기동물

2.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

3.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·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 중인 경우에는 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사의 진단과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도 보호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### 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

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,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·첨부하여야 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### ○ 사 유

- 금번 개정 조례안은 불필요한 조문 정비 및 상위법률과의 용어 통일과 인용 조문 오기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,
- 별도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으로 위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

### ○ 작성자 : 농정국 축수산과장 최동수